

2008. 7. 11(금)  
제171회 달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 檢 討 報 告 書

달 성 군 의 회  
전문위원 김 정 현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달성군수

**2. 제출일자 :** 2008. 7. 7

**3. 제출이유**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승인의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제134조 제1항(결산)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5조(결산 등의 심사)

**5. 세입세출 결산규모**

**1) 총괄**

(단위: 백만원)

구 분 회계별	예산액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A)	세출결산액 (B)	집행잔액 (C=A-B)
합 계	293,100	352,118	357,773	218,933	138,840
일반회계	269,000	326,580	333,495	207,422	126,073
특별회계	24,100	25,538	24,278	11,511	12,767

- 세입결산액(A)은 예산액 대비 22% 증가
- 세출결산액(B)은 예산현액의 62.2% 지출
- 집행잔액은(C)은 예산현액의 39.4%

## 2) 예산의 이용 · 전용 · 이체사용

○ 예산이용 : 해당없음

○ 예산전용 : 2건

(단위:천원)

항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세항	세세항	목		감액	증액	
총무 행정	인사 관리	경상 예산	연금부담금 등	3,084,020	300,000		· 성과상여금 부족분을 소요 예산액보다 여유가 있는 연금부담금등에서 전용
			포상금	953,136		300,000	
보건 관리	건강 증진	사업 예산	민간이전	43,903	43,903		·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전자비우치위탁사업의 취소로 당초예산대로 일반보상금으로 전용
			일반보상금	40,000		43,903	

○ 예산이체 : 해당없음

## 3) 계속비 집행 : 해당없음

4) 예비비 지출 : 6건 / 98,554,190원

(단위:원)

사업명	지출결정액	지출액	사 유
6건	101,881,390	98,554,190	
조직개편에 따른전산통신망 구축	35,000,000	33,072,800	· 조직개편에 따른 전산통신망 구축을 위한 소요예산
소송사건 패소에 따른 배상금	17,781,390	17,781,390	· 2004년 수해복구공사 하도급 공사대금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지출
대구경북 도농한마당 박람회 참가비	20,000,000	18,600,000	· 대구·경북 경제통합의 일환으로 추진한 박람회 참가비
재난지원금	500,000	500,000	· 8.7~10일간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지원금
재난지원금	28,000,000	28,000,000	· 9.16~9.17 제11호 태풍 “나리”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금
우박피해 농가보상금	600,000	600,000	· 6.8일 우박피해 복구지원을 위한 농가보상금

## 5)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

○ 일반회계 : 167건 / 84,955백만원

- 명시이월 : 120건 / 72,083백만원

- 사고이월 : 47건 / 12,871백만원

○ 특별회계 : 해당없음

## 6)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 6. 기금

○ 총괄

(단위:천원)

구 분 종류별	전년도말 현재액 (가)	당해연도 수납액 (나)	당해연도 지출액 (다)	당해연도말 현재액 (라)=(가+나-다)
계	4,661,012	815,565	77,162	5,399,416
청소년자립지원기금	80,466	3,753	0	84,220
체육진흥기금	210,000	39,104	9,104	240,000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261,397	12,238	12,000	261,635
노인복지기금	393,175	68,017	0	461,192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200,838	85,747	0	286,584
장애인복지기금	230,299	67,068	0	297,367
식품진흥기금	141,179	69,185	31,963	178,401
환경보전기금	406,308	3,037	0	409,345
재난관리기금	2,046,480	406,526	7,912	2,445,094
농업인조직체육성기금	690,870	60,890	16,182	735,577

## 7. 채권·채무

### ○ 채권

(단위:천원)

구 분 회 계 별	전년도말현재액	당해연도증감액	당해연도말현재액
합 계	3,232,000	645,420	3,877,420
일반회계	3,224,000	214,841	3,438,841
특별회계	8,000	430,579	438,579

### ○ 채무

(단위:천원)

구 분 회 계 별	전년도말현재액	당해연도증감액	당해연도말현재액
합 계	24,719,600	△1,946,800	22,772,800
일반회계	14,019,600	△1,946,800	12,072,800
특별회계	10,700,000		10,700,000

## 8. 공유재산

(단위:천원)

구 분 용도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 감액		당해 연도말 현재액
		증	감	
합 계	376,597,290	367,753,804	119,398,730	624,952,367
행정재산	338,281,043	344,530,182	103,815,069	578,996,156
보존재산	0	7,709,549	0	7,709,549
잡종재산	38,316,246	15,514,072	15,583,661	38,246,657

### ○ 2007년도말 현재액은

- 토지 16,023천m<sup>2</sup> 353,630백만원
- 건물 105,326m<sup>2</sup> 102,923백만원
- 기타 10,710건 168,400백만원

## 9. 물 품

(단위: 개, 천원)

구 분	전년도말	취 득			처 分			당해연도말
	현재액	소계	구매	관리 전환	소계	매각	관리 전환	보유액
수량	277	82	82		15	6	9	344
금액	3,494,194	425,708	425,708		489,243	97,794	391,449	3,430,659

## 10.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

### 1) 일반회계

#### ○ 세입부문

- 지방세 징수 및 체납세 정리에 대한 방안
- 체납액 결손처분에 대한 대책
- 지방세 등의 과오납으로 인한 반환액 과다발생
- 지방세 징수 및 체납세 정리에 대한 방안

#### ○ 세출부문

- 집행잔액 과다 발생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증가에 따른 대책
-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 기금의 효율적 운용 방안
-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에 대하여
- 독거노인도우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에 대하여

### 2) 특별회계

-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의 집행실적 저조

## 11. 검토의견

-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총괄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 예산현액은 3,521억 1,816만 2,770원이며, 수납액이 3,577억 7,323만 3,385원, 지출액은 2,189억 3,269만 8,241원입니다.
  -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있어서는 세입결산액이 3,334억 9,556만 3,628원으로 예산액(2,690억원) 대비 22%정도 증가하였으며, 이는 초과수납된 것으로 여겨지며 이중 미수납액은 4.7%인 157억 4,400만원 정도로써 대체로 양호한 수준으로 보여지나,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적극 마련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세출결산액은 2,074억 2,220만 7,456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3.5%가 집행되었으며, 전년도(68.7%)보다 5.2%정도 감소하였음. 부분별 집행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가 89%, 사회개발비 58%, 경제개발비가 61%, 민방위비 80%, 지원 기타경비 45% 정도의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음.
  - 임여금은 예산현액 대비 38.6%로 전년도 32.9%보다 다소 증가 하였으며, 이는 예산의 계획성있는 관리 및 집행으로 임여금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됨.

○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예산현액이 255억 3,842만 7,96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42억 7,766만 9,757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9%로써 전년도 동일하며,

세출결산액은 115억 1,049만 785원으로

예산현액(25,538백만원)의 45%정도의 집행이 이루어졌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6.3%로 전년도(30%)보다 다소 증가하였는 바, 그 사유로는 예산집행잔액 및 예비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집행사유 미발생 및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짐.

○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총 6건에 9,855만 4,190원이 지출되었으며,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상과 같이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 의견과 같이 적법한 절차에 의거 변동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은 향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정계획의 수립과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검 토 보 고 서

<제171회 정례회>

2008. 7. 11

달 성 군 의 회  
전문위원 김 동 섭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

#### I. 개요

1. 제출연월일 : 2008년 7월 7일
2. 제출자 : 달성군수(행정지원과)
3. 개정 이유

○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2008. 2. 29)됨에 따라 여비 지급을 사후정산제로 실시하였으나, 여비정산 및 자료증빙에 어려움이 있고, 정산제도 시행 후 여비 지출금액이 증가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행정안전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달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표준안에 의거하여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4. 주요내용은

##### 가.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 신설(안 제3조의2)

○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의 기준에 의거 지급도록 하는 규정 신설

##### 나. 공무원여비규정 제8조의2를 준용하지 않음(안 제4조제8호)

○ 현행 운임 및 숙박비 정산제 ⇒ 정액제로 환원  
○ 국내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 및 정산할 때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토록 규정한 조항을 준용하지 않음.

## 5. 관계법령

-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

(2008. 4. 7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여성제도팀 - 324호)

##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공무원 여비지급을 정액제로 실시해 오던 것을 공무원여비 규정의 개정(2008. 2. 29)으로 사후 정산제로 관리하여 왔으나, 사후정산에 의한 실비정산 방식으로 여비를 지급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며,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오히려 비용이 증가하여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되어,
-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사후 정산제를 사전 정액제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여비조례표준안에 의거 달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표준조례안에 근거한 적정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지방공무원여비조례(표준안)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 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 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 3 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서울특별시장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 가목을 적용한다.

②광역시장 · 도지사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 나목을 적용한다.

③시장 · 군수 및 자치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 부군수 및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 4 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8조 및 제16조 중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지침의 “지방자치단체여비카드”로 본다.

1. 제17조 · 제22조 ·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 본다.

2. 제17조제1항 단서중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18조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4.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9조제1항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 한다.
7. [별표 1] 각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 부 칙 <82.12.20>

①(시행일) 이 영은 1982년 1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조례) 조례 제○○호 ○○직할시(도) 지방전문직공무원(지방계약직원) 국내여비 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 부 칙 <89.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95.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 칙 <98.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08.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 I. 개 요

1. 제출연월일 : 2008년 7월 7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세무과)
3. 제정 이유

○ 원활한 군정추진의 기본이 되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나아가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4. 주요내용은

- 가.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 1매당 본세의 세액이 30만원 이상 자동이체 납부자에 대한 등기우편료 1회 상당의 지방세 보너스 캐쉬백 지급을 규정
- 나. 연간 5건 이상의 정기분 지방세 전자납부자에 대한 등기우편료 1회 상당의 지방세 보너스 캐쉬백 지급을 규정
- 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납부자에게 추첨을 통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강검진 상품권지급

### 5.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 자주재원 확보를 돋는 성실납세자에게는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납세 의지를 고취시키고, 납기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자료]

## 관 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 I. 개 요

1. 제출연월일 : 2008년 7월 7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세무과)
3. 개정 이유

○ 「지방세법」 개정과 「교통세법」의 법명 변경에 따라 관련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4. 주요내용은

「지방세법」 제196조의17제1항의 주행세의 세율이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000분의 215로 개정됨에 따른 세율변경과 「교통세법」이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법명이 변경됨에 따른 조례 정비 사항임.

### 5.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3조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상위법령의 개정과 법명 변경에 따라 표준조례안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

## 관 계 법령

### 〈지방세법〉

第3條 (地方稅의 賦課·徵收에 관한 條例<개정 1998.12.31>) ① 地方自治團體는 地方稅의 稅目, 課稅客體, 課稅標準, 稅率 기타 賦課·徵收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條例로써 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

② 삭제 <1988.4.6>

③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條例의 施行에 따르는 節次 其他 그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을 規則으로 定할 수 있다.

第9條 (課稅免除等을 爲한 條例) 第7條 및 第8條의 規定에 依하여 地方自治團體가 課稅免除 不均一課稅 또는 一部課稅를 하고자 할 때에는 行政안전부장관의 許可를 얻어 當該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써 定하여야 한다.<개정 1978.12.6, 1998.12.31, 2008.2.29>

##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 I. 개 요

1. 제출연월일 : 2008년 7월 7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세무과)
3. 개정 이유

2007. 12. 31일 이전에 등록한 서민 생계형 전방조종자동차(붕고, 베스타, 타우너, 그레이스, 프레지오)에 대한 자동차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정임.

### 4. 주요내용은

- 2007. 12. 31일 이전에 신규등록 된 차량은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
- 2008. 1. 1일 이후 신규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기존대로 감면율('08년 66%, '09년 33%감면)을 유지
- 2007년 신규등록 후 2008년 이전등록 시에도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임.

### 5.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3조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안은 대부분 생계형인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시민들의 자동차세 부담 완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지방 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경감하기 위해 달성군세 감면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 유류비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의 생활에 다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

## 관 계 법령

### 〈지방세법〉

第3條 (地方稅의 賦課·徵收에 관한 條例<개정 1998.12.31>) ① 地方自治團體는 地方稅의 稅目, 課稅客體, 課稅標準, 稅率 기타 賦課·徵收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條例로써 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

② 삭제 <1988.4.6>

③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條例의 施行에 따르는 節次 其他 그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을 規則으로 定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I. 개 요

- 제출연월일 : 2008년 7월 7일
- 제출자 : 달성군수(세무과)
- 제정 이유

○ 2007년도 체납세 징수의 특성에 비추어 보아 개인의 공적 및 복수 또는 팀별 공적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여 체납세 징수 성과를 보다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4. 주요내용은

체납세 징수에 직접 종사하지 않더라도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등 특별 정리계획에 의해 체납세 징수 활동에 참여 또는 동원 되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징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5.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3조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 장기체납 및 고액체납으로 인해 우리군의 자주재원 확보에 큰 어려움을 끼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하여 담당자 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의 노력이 요구되는 가운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I. 개 요

1. 제출연월일 : 2008년 7월 7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세무과)
3. 개정 이유

「비료관리법」의 개정으로 비료생산업의 등록 및 비료수입업의 신고가 시·군·구로 이관되었으며, 시·군·구의 조례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례 개정을 통하여 수수료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고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4. 주요내용은

- 비료생산업의 등록신청 1건당 30,000원 신설
- 비료수입업의 신고 1건당 20,000원 신설

### 5.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37조 【수수료】

##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안은 「비료관리법」의 개정으로 비료생산업 및 수입업의 신고업무가 시·군·구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자료]

## 관 계 법령

### 〈지방자치법〉

- 제137조 (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 I. 개 요

1. 제출연월일 : 2008년 7월 7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환경관리과)
3. 개정 이유

- 현재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은 환경부 지침에 근거해 문화상품권을 차등지급하여 왔으나, 지급기준 및 절차 등 법적근거가 미약하고,
- 환경부 및 대구시에서도 지자체별 자체실정에 맞는 관련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적극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참여를 유도하고 신고포상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 현행 조례 중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용어 및 내용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용어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4. 주요내용은

-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 추가(제17조 제3항)

### 5. 관련법령

-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 환경부에서는 환경오염행위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지침인 『환경부 예규 제267호』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 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조례』를 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따라서 이를 보다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의 대구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여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자율감시 및 신고정신을 높이고 나아가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하여 우리 군을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선진도시로 만드는 밑거름이 되는 타당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

## 관 계 법령

###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第15條 (賞金) 이 法에 規定된 犯罪를 發覺전에 搜查機關 또는 環境部長官, 地方環境官署의 長,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에게 통보한 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賞金을 지급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I. 개 요

1. 제출연월일 : 2008년 7월 7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환경관리과)
3. 제정 이유

- 기존 조례에서 정하지 못한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 기금 운영을 위한 중요사항을 신설하고
- 군 차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의거 조례 전반에 대한 내용의 보완·수정을 통해 기금관리에 명확성을 기하기 위함.

### 4. 주요내용은

-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기금증식을 위한 재적립 조항 추가
-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 회의에 관한 규정  
(안 제5조 내지 제8조)

##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안은 '98년 10월 제정된 이래 '02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한차례 개정된 바 있었으나 당초 조례제정 시 기금의 적립 및 기금집행을 위한 위원회 구성 등 중요한 사항이 빠져 있어 기금이용의 법적근거가 미약하다는 문제가 있었음.
- 이에 기존에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군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의거 조례 전반에 대한 내용의 보완·수정을 통해 기금관리 조례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I. 개 요

1. 제출연월일 : 2008년 7월 7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공원녹지과)
3. 개정 이유

○ 비슬산 자연휴양림 내 산림문화휴양관 세미나실이 준공됨 (2008. 4. 14)에 따라 세미나실 시설사용 및 환불 처리 규정 등을 조정하여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4. 주요내용은

- 산림문화휴양관 2층 세미나실 사용료 신설 ( $196\text{m}^2/120\text{인용}$ )
  - 사용요금 : 주말(금·토·일) 200,000원, 주중 150,000원  
(1회 4시간 기준 : 1시간 초과시 20,000원 추가)
- 시설사용료 위약금처리 규정 변경
  - 취소일 기준으로 위약금을 차등 부과
- 시설사용료 환불처리 규정 신설 (관리기관의 귀책사유 시)
  - 사용일기준 5일전, 2일전, 1일전, 당일 통보한 경우 통보일 기준으로 배상금을 차등 지급
- 계량단위 변경 (평 →  $\text{m}^2$ )

## 5. 관련법령

- 소비자 기본법 제16조
-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제정경제부 고시-제 2005-21호)
- 계량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요령  
(산림청 예규-제530호)

##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 비슬산 자연휴양림 내에 산림문화휴양관이 준공됨에 따라 시설 사용료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소비자 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의거 시설사용에 따른 환불처리 규정을 조정하고 2007. 7. 1일부터 법정개량단위 사용 의무화로 숙박 시설 면적단위를 『평』에서 『m<sup>2</sup>』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산림문화휴양관 시설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자료]

## 관 계 법령

### 〈소비자 기본법〉

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2.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3.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4.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육성

##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요령

제정	2002. 5. 13.	예규 제501호
전문개정	2003. 9. 9.	예규 제506호
개정	2004. 8. 26	예규 제510호
개정	2005. 7. 26	예규 제515호
개정	2006. 1. 18	예규 제519호
개정	2006. 8. 29	예규 제530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연휴양림의 입장료와 시설사용료의 징수 및 수입금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자연휴양림 입장료와 시설사용료의 징수 및 수입금 취급은 다른 법령과 훈령·예규 등에서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입장료"라 함은 자연휴양림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자연휴양림을 산책·탐방·등산하고자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라 함은 자연휴양림에 시설한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수련장, 야영장, 오토캠프장, 주차장 및 몽골텐트 등의 사용료를 말한다.
3. "수입금"이라 함은 자연휴양림의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로 징수한 현금,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 무통장으로 입금한 금액 및 인터넷·폰뱅킹으로 입금한 금액 등을 말한다.
4. "일일수입금"이라 함은 00:00~24:00까지 징수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말한다.
5. "징수담당자"라 함은 자연휴양림의 매표소에서 입장권 등을 발매하거나 국립자연휴양림사무소에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 자를 말한다.
6. "마일리지"라 함은 국유자연휴양림을 이용한 실적을 기준으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환산하여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제4조(수입금출납공무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 3 및 산림청소관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규정 제7조에 따라 자연휴양림별로 수입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5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①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다만, 숲속수련장 시설사용료는 시설의 구조 및 정도를 감안하여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별도 정한다).

③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숲속의집 또는 산림문화휴양관 등의 시설사용료를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시설사용료 기준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1. 자연휴양림을 많이 찾는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성수기와 비수기(성수기 이외의 기간)의 주말 등(금요일, 토요일과 공휴일의 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추가로 소요되는 유지·관리비 등을 감안하여 3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2. 비수기 주중(주말 등 이외의 기간)에 가동률 증대 등을 위하여 3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 기준을 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즉시 산림청장에게 보고하고 조정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⑤ 시설별 사용시간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자연휴양림 자체실정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1. 숲속의집 및 산림문화휴양관의 사용시간은 사용일(check-in) 15:00부터 퇴실일(check-out) 13:00까지로 한다.
2. 야영장 및 오토캠프장의 일일사용시간은 사용일 당일 13:00부터 익일 13:00까지로 한다.
3. 일일개장(입장)시간은 당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⑥ 국립자연휴양림의 관리자는 타이용객의 피해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시설물 적정인원을 초과한 인원에 대하여 입장을 거부하거나 강제 퇴실시킬 수 있다.

⑦ 제5항의 시설별 사용시간 기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매표소 입구 등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①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는 현금(체신판서 또는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신용카드,

인터넷·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자연휴양림별로 발매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업무가 종료되거나 징수담당자가 업무를 교대할 때에는 즉시 수입금출납공무원 또는 다음 징수담당자에게 발매기와 현금을 인계인수하고 상호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④ 발매장소에는 발매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관계자(수입금출납공무원 및 발매업무를 감독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사용료의 면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산림공무원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산림청장이 산림교육, 문화행사 및 산림홍보 등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숲해설가 등 자연휴양림 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자연휴양림 근무자 숙소로 필요한 경우
5. 장애인 등록차량 및 국가유공자 소유차량이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다만, 주차료에 한한다.
6. 적립된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결제한 경우

제8조(산림경영문화실 운영) ①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자연휴양림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산림경영문화실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문화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제7조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이중 예약 등으로 예약된 객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산림정책과 경영의 원활한 추진 및 관련기관과의 협조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자연휴양림내의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문화실은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예약금) ①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및 숲속수련장을 인터넷 또는 전화 등으로 예약한 자에게 총 사용금액의 30% 이상을 예약 후 3일 이내(공휴일은 제외)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이 3일 이내일 경우에는 사용일 전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②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제1항의 예약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위약금 처리) ①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예약사항을 사용일 또는 사용일에 임박하여 취소하는 경우 소비자보호법 제12조 및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와 같이 예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사용일(check-in) 3일 이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전액환불
2. 사용일(check-in) 2일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총 사용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부과
3. 사용일(check-in) 1일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총 사용료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부과
4. 사용일(check-in) 당일에 예약을 취소하거나 취소하지 않고 미 입실한 경우 총 사용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부과

②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 부과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상재해 등으로 교통이 단절되는 등 자연휴양림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2.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11조(환불처리) ①자연휴양림 이용자가 입장 후 30분 이내에 퇴장하여 납입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환불을 요구할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예약을 취소하거나 예약금을 잘못 입금한 자에게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3일 이내(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에 환불하여야 한다.(다만, 환불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환불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③관리부실 또는 착오 등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예약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보호법」 제12조 및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상할 수 있다.

1. 사용일(check-in) 5일전까지 통보한 경우 계약금 전액 환불
2. 사용일(check-in) 2일전까지 통보한 경우 계약금 전액 및 사용료의 10%

## 배상

3. 사용일(check-in) 1일전까지 통보한 경우 계약금 전액 및 사용료의 20% 배상

4. 사용일(check-in) 당일 통보하거나 통보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 전액 및 사용료의 30% 배상

④ 환불은 인터넷·폰뱅킹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인터넷·폰뱅킹으로 수입금출납계좌에서 출금 시 금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불금액 반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1회 및 1일 등 출금한도액 설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사용중 퇴실하게 될 경우 사용일자를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이용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에 대하여 환불하여야 한다.

제12조(징수담당자 임무) ① 징수담당자는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징수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담당자는 근무시간 중 지정된 복장과 명찰을 착용하고 용모를 단정히 하여 친절하게 징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징수담당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정하는 일일수입금기록부에 수입금 내역을 기록하고 수입금출납공무원은 반드시 익일 이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3조(대장의 비치) 숲속의집예약대장, 열쇠기록부, 입장권수불부 등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타의 대장은 자연휴양림 실정에 맞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수입금 보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로 징수한 수입금은 견고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전일 수입금은 익일(금융기관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오전 중에 자연휴양림명의의 수입금출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 자연휴양림으로부터 30km 이상 원거리에 있거나 또는 금고에 보관한 현금이 50만원이하인 경우는 7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금고에 보관할 수 있다.

제15조(수입조치) 수입징수관(분임수입징수관을 포함한다)은 일주일 단위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입금을 국고에 세입조치도록 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